

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1조 위반자에 대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,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미거주, 수취인 부재,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1. 공 고 기 간: 2026. 10. 2.(금) ~ 2026. 10. 16.(금)
2. 공고대상

차량번호	성 명	주 소	위반내용	해태기간	과태료 금액(원)	비 고
37두3051	(주)넥스트엔****	서울특별시 서초구	변경등록미필	2018.05.31. ~ 2026.07.27. (2980일)	300,000	본처분

3. 공고내용

가.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
나.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고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 우리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가 있을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이의제기 방법

- 우편 제출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 786(부전 현장민원센터)
- FAX 제출: 051-818-8611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(☎051-290-556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10. 01.

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